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구 미 시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출신 인재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면학 환경을 조성하여 구미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어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5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출연기관 : (재)구미시장학재단 * 서울 구미학숙 운영기관

(2) 출연금액 : 150백만원(운영예산)

(3)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나. 사업 개요

(1) 사업명 :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2길 30(동선동2가)

(2)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3) 사업내용 : 서울 구미학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운영예산 : 430백만원(출연금 150, 입사생수입 170, 전기 이월금 110)

다. 출연의 필요성

(1) 학숙 입사생들에게 쾌적한 주거·면학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우수 인재 육성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2) 인건비, 운영비(식재료비, 공공요금) 등 학숙 운영 소요예산 총당 및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3)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예산재정과장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 ③ (생략)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기금 출연) 시장은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서울 구미학숙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 서울 구미학숙 목적사업회계 결산자료 및 2024년 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출연금 책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 출	15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87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 비	15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870,000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학숙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재정 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강원진(☎480-270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총 계	150,000	
인 건 비	소 계	110,000
	급 여	46,000 ● 사감 14,000,000원×2명 ● 주방조리원 18,000,000원×1명
	제 수 당	54,000 ● 주휴수당 등 54,000,000원×1식
	사회보험료	10,000 ● 건강보험 등 10,000,000원×1식
운 영 비	수 용 비	40,000 ● 식재료 구입비 40,000,000원×1식

※ 2025년 운영예산(계획) : 430백만원

- ▶ (수입) 시 출연금 150, 입사생수입 170, 전기 이월금(추정) 110
- ▶ (지출) 인건비 110, 운영비 220, 시설유지비·자산취득비 40, 예비비 60

소 관 부 서		교육청소년과
입 안 자	과 장	김 종 미
	팀 장	정 선 심
	담 당 자	강 원 진 (480-2703)